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68

발의연월일: 2022. 9. 6.

발 의 자:김희곤·구자근·김형동

김영식 • 박대수 • 안병길

윤재옥 • 이명수 • 이인선

전봉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는 농어민·서민 등의 소득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, 농협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·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, 조합법인이 본연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며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비과세예탁금 등 저축지원 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서민·농어민·소상공인 등으로 이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, 법인세 과세특례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법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해주고 있는 등 위의 제도들은 농어업인·서민 등의경제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사태에 다른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, 고물가, 고금리 현상이 심화되어 농어민·서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있는바, 농어민·서민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,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.

이에 새마을금고·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·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(안 제72조제1항, 제88조의5, 제89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9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, "202 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 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9년 1월 1일"로 하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) ①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----2027년 12월 31일----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 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)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)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「해당금액이 20억원(2 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

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8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)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·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

·.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세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
대한 과세특례)

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배당소득등"이라 한다) 중 202 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- 1. <u>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</u> <u>12월 31일</u>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: 100분의 5
- 2.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 ①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

<u>2027</u>
년 12월 31일
1.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
12월 31일
<u>12월 31일</u>
12월 31일 2. <u>2029년 1월 1일</u>
2. <u>2029년 1월 1일</u>

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, 이하 "조합등예탁금"이라 한다)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

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<u>2027년</u>
12월 31일
<u>2</u>
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
월 31일
<u>.</u>
② 2029년 1월 1일